

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主要 法的根據

○ 지방세법 시행령 제9조(납부 및 수납방법)

- 제2항 :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(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에서 수납하여야 하며, 세무 공무원은 이를 수납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 또는 오지에서 징수하는 경우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무공무원이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○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 2(세무공무원의 수납)

영 제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방세를 수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제1호 : 지방세 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이 없는 도서, 오지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징수하는 경우

제2호 :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액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

2.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

.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266조 제4항 및 제196조의 9의 조항이 법률 제4995 ('95. 12. 6)호로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18조의 법률 조항삭제 및 조례 제25조 신고의무 조항을 삭제하고 과세표준과세율 조항을 신설 개정하려는 것이며 지방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세무공무원의 지방세수납규정을 신설하고 해당용어 일부를 정리하는 것이며 지방공무원 복수지 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 및

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는 벽지지역, 도서지역, 접적지역의 금융기관이 없는 지역에서의 수납과 납세고지서 매당 50만원 이하의 지방세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직접 수납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비리 발생의 개연성을 네포하고 있어 제도적인 장치마련과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지난 지방세 비리사건 이후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효과적인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.